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6. 14.

제안자 : 조영재 의원의

□ 수정 이유

○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함은 물론, 운영의 현실화를 기함.

□ 수정 주요내용

○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조례 제명을 선정
- 조례안의 제명을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함.

○ 조문 내용의 구체화 및 현실화

-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함

○ 조문 내용을 명확화 및 운영의 현실화

- 안 제31조제1항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로 함.

- 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보전담관"을 "공보전담위원"으로 함.

○ 유관기관과의 포괄적인 협력체계 구축

- 안 별표 1의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표중 유관기관지원팀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고 "한국도로
공사 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함.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안 제8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삽입한다.
- 안 제31조제1항중 "통보할 수 있고"를 "통보하여야 하고"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를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공보전담관"을 "공보전담위원"으로 한다.
- 안 별표 1의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표중 유관기관지원팀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고 "한국도로공사 지사"를 "한국도로공사"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제8조(상황판단회의)</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p> <p>제31조(평가 및 포상) ① 본부장은 제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상황판단회의)</p> <p>②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31조(평가및포상) ①통보하여야 하고..... ②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p> <p>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공보전담위원..... ② 공보전담위원.....</p>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편성 (제4조제3항제1호 관련)</p> <p>1. 종합상황실 편성 및 담당업무</p>	<p>[별표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편성 (제4조제3항제1호 관련)</p> <p>1. 종합상황실 편성 및 담당업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종합상황실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종합상황실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유관기관지원팀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유관기관지원팀 </div>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전력충북지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 공사 충북본부〉</p> <p>1. 댐 및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u>〈국립공원관리공단 지사〉</u></p> <p>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u>〈한국도로공사 지사〉</u></p> <p>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전력충북지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 공사 충북본부〉</p> <p>1. 댐 및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u>〈국립공원관리공단〉</u></p> <p>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u>〈한국도로공사〉</u></p> <p>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p>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도내 전 지역 또는 지역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제”라 함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제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기반재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충청북도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5.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함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과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 장 : 행정부지사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함.
2. 총괄조정관 :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함.
3. 통제관은 자연·인적재난, 기반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소방본부장 포함)이 되며, 차장 및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한 통제관을 보좌한다.

③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운영 한다.

1.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1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 기준 : 별표 2
3. 기반재난의 경우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은 운영단계별로 국가기반재난 지역안전관리계획에 의거 편성·운영한다.
4. 재난유형에 따른 사전대비체제에서는 실국대책반장을, 비상·대응단계에서는 차장을 책임관으로 하여 실무반을 운영한다.

④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고,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기반보호총괄관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3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 4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

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현장 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등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충청북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 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단에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충청북도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②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

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 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연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연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충청북도기반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 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 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등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충청북도지사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국가기반재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충청북도안전관리계획의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및 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기능을 보장하고 사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장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 책임 수행기관 및 유공자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2287호, 1996.10.18)는 이를 폐지한다.
-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제1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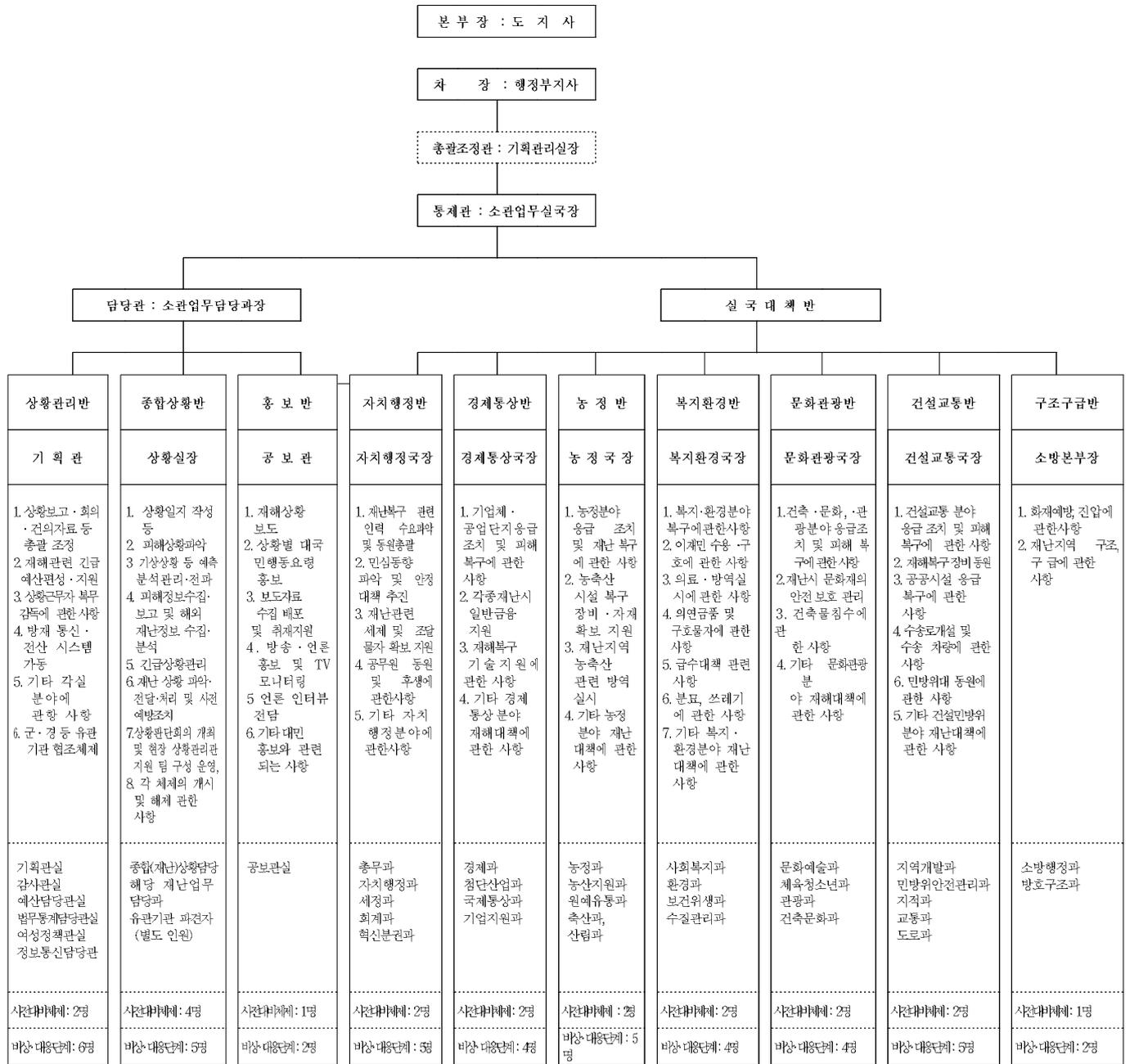
1. 종합상황실 편성 및 담당업무

종합상황실장

재난정보관리팀	상황분석판단팀	유관부서지원팀	유관기관지원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 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 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 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상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개시 및 해제 - 체제별 근무명령 5.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 복지·위생 및 환경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3. 재해지역 수해 부유 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자원봉사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및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농정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농작물·수산증양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2.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관광 관련 부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건축, 축대, 관광시설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전력충북지사, 수원공사,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및 저수지 관리 현황 파악 분석 및 전파 등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공원관리공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공원 입산통제 및 등산객 관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도로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1. 재난정보 및 상황분석판단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유관부서지원팀은 상황실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를 추진하되 종합상황실장은 해당 실국에서 재난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3. 유관기관지원팀은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를 구축한다.

[별표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재4조제3항제2호 관련)



- <근무방법>
1. 각실국 주무과장은 실무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담당급 1인과 직원을 2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체제 20명, 비상·대응단계 42명)
 3. 실국대책반 근무자중 5급 담당급 1인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외에는 각 실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하여 근무한다.

[별표 3]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전 결 권 자			
			차 장	총 관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본부조직 및 운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
	본부 당직명령 및 당직근무 상태 지도점검					○
	재해일지 기록배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	
시·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감독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	홍수 등 경보 발령시					○
	홍수주의보 발령시					○
	기상주의보 발령시					○
방재용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수난구조 사 항	헬기 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	
	수난구조 상황과악					○
군 지 원 사 항	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사항 과악					○
구호활동 사 항	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
	구호활동 상황 과악					○
통 신 망 운 영 에 관한사항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피해종합 대	기상자료 수집					○
	피해상황 자료수집					○
	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지방조사반 현지과견 결정				○	
	피해액 확정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 제관 전결)		○			
	복구계획 수립 (단, 우심시군이 없을 경우 통 제관 전결)	○				
	복구사업 지도 감독					○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 치되는 사항						○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별표 4]

기반체계보호 전결 사항(제6조 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장	총 조 정 관	통제관	담당관
충청북도 대책본부 조 직 및 운 영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
	상황일지 기록 비치					○
	본부 물품관리 운용					○
	본부 운영비 내시 및 배정요구				○	
	본부 급량비 등 지출요구					○
충청북도 대책본부 회의운영	회의안건 작성 등 운영			○		
	회의소집 방침결정		○			
	회의소집 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					○
재난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지도·감독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감독					○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
상황단계별 조 치	예방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비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대응단계별 각종 조치사항			○		
	수습·복구단계별 조치사항			○		
상 황 관 리	재난상황 수집전파					○
	대규모 발생 예측·분석					○
군 지 원 사 항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 및 협의				○	
	군 장비 및 인력지원사항 파악					○
대응·수습에 따른 지휘에 관한 사항			○			
공 권 력 투 입 지 원 사	공권력 지원요청 및 협의	○				
	병역 및 장비 지원사항 파악					○
통 합 지 원 대 책	지원상황 자료수집					○
	지원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
	현장지원단 구성 및 현지 파견			○		
	현장지원단 활동상황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 동원사항 파악					○
	수습복구용 자재·장비·인원의 동원				○	
	불법 유형별 대응방안 분석·조치					○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보고서(제23조 관련)

즉보 제 호

수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인 :
제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1. 일시 :	
2. 장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제2호 서식]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동(면) 리 번지
3. 상황 개요(기본현황)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5. 응급조치사항(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기초단체)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장 비 :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 인명피해 :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 :
7. 향후전망 및 지역기반보호 대책(복구계획)
○
○

관 계 법 령 발 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다만,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그 재난의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방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3.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와 장비 및 인력의 지정
7. 그 밖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물자·자재의 비축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소유자 또는 지정대상이 되는 자와 협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

생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동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계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

3.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군·구의 소방서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된다.

③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재난관리에 대한 문책요구 등) ①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재난응급대책,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에 불응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④법 제3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당해 지역에서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제방·호

안 · 수제 · 보 · 갑문 · 수문 · 수로터널 · 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 ·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8.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시설중 유람선 · 낚시어선 · 모터보트 · 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 · 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 · 제설시설, 토사유출 · 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 · 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1. 포대류 · 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 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